

[별표 1의2] <신설 1996.12.30>

자동차의 차령(제12조제1항관련)

차 종	사업의 구분		차 령	비 고
승 용 자 동 차	운송사업용	개인택시	5년	시·도지사가 당해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자동차운행 여건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·도의 공보에 고시한 경우, 좌란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이 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의 차령은 좌란에서 정한 기간에 당해 차종의 정기검사유효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더한기간으로 한다.
		중·대형개인택시	5년6월	
		일반택시	3년6월	
		중·대형일반택시	4년	
	자 동 차	중·소형	5년	
	대여사업용	대형	8년	
	특수여객자동차	중·소형	5년	
	차운송사업용	대형	8년	
승 합 자동차	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		10년	
	기타 사업용		8년	
화 물 자동차	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		8년	
	기타 사업용		11년	